

의안번호	2215153
의 퇴 인	박상웅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1.
추 계 번 호	25D6864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제2항 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2항 (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-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의미함
 - 대전광역시(유성구), 부산광역시(동구·남구 등), 대구광역시(달성군·북구 등), 울산광역시(울주군 등), 세종특별자치시(연서면 등), 강원특별자치도(강릉·원주·영월·동해 등), 충청남도(보령·예산·서산 등), 충청북도(진천·제천·보은 등), 전북특별자치도(김제·전주 등), 전라남도(광양·여수 등), 경상북도(포항·구미·상주 등), 경상남도(고성·창원 등), 제주특별자치도(서귀포)¹⁾
-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수와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현재로서는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업의 요건,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 기업의 사업장 이전 여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
-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010호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